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 <목 차>

### 1.GMO 표시 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김현정
	담당부서 (과)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직급	식품위생주사보
	국장	최종동		연락처	043-719-2192
	과장	이호동		이메일	mfdskhj @mail.go.kr

2026. 02. 12. 작성

식품안전정책국장 직무대리 최종동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GMO 표시 대상 확대											
	2.규제조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3조											
	3.위임법령	식품위생법 제 12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2.27~2026.04.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하 ‘GMO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 승인된 GMO 농산물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p> <p>그러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최종 제품의 GMO 성분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 25.12.30일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라 제조·가공 등으로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시행 : `26.12.31.)</p> <p>따라서 상기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표시대상 식품을 통 고시에 규정하는 것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됨</p>											
	7.규제내용	GMO 성분 등이 남지 않는 식품 중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유 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규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간장 833곳, 당류 2,138곳, 식용유지류 2,237곳 * `24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해관계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국민</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	간장 833곳, 당류 2,138곳, 식용유지류 2,237곳 * `24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	간장 833곳, 당류 2,138곳, 식용유지류 2,237곳 * `24년 기준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GMO 성분 등이 남지 않는 식품 중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b>비용</b>	<b>편익</b>	<b>순비용</b>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본 규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여부에 관한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조·가공 후 GMO가 남지 않는 식품 중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품목에 한해 '표시대상'으로 정하여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소비자는 표시 정보 확대를 통해 제품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는 편익이 기대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미적용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현 행	개 정 (안)
<p>나.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p> <p>다.·라. (생 략)</p> <p>2. ~ 7. (생 략)</p> <p>제3조(표시대상) ① (생 략)</p> <p>&lt;신 설&gt;</p> <p>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나.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 -----</p> <p>다.·라. (현행과 같음)</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1. 「<u>식품의 기준 및 규격</u>」에 따른 <u>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u></p> <p>2. 「<u>식품의 기준 및 규격</u>」에 따른 <u>당류</u></p> <p>3. 「<u>식품의 기준 및 규격</u>」에 따른 <u>식용유지류</u></p> <p>③ 제1항 및 제2항----- ----- -----.</p>

현 행	개 정 (안)
<p>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u>식품 또는 식품첨가물</u>.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가. ~ 다. (생략)</p>	<p>1. ----- ----- ----- ----- <u>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u> -----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u>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u></p>	<p>&lt;삭제&gt;</p>
<p>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5조(표시방법) ----- ----- -----.</p>
<p>1. ~ 7. (생략)</p> <p>8. <u>제3조제1항</u>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제3조제1항 및 제2항</u>----- ----- ----- ----- -----</p>

현 행	개 정 (안)
<p>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p>	<p>----- ----- ----- ----- ----- -----.</p>
<p>9. (생 략)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9.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 ----- -----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p>

현 행	개 정 (안)
	<p>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하 'GMO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승인된 GMO 농산물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 그러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최종 제품의 GMO 성분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 최근 '25.12.30일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라 제조·가공 등으로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시행 : '26.12.31.)
- 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표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시대상(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26.2.11.)
- **(정부 개입 필요성)**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표시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표시대상 식품을 동 고시에 규정하는 것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GMO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 중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한하여 표시 대상 확대
	내용	GMO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는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
규제대안2	대안명	GMO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 중 식용유지가공품을 제외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한하여 표시 대상 확대
	내용	GMO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식용유지가공품 제외)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대상 범위가 명확하여 규제 일관성·명확성 확보</li> <li>▶ 식품 유형 간 차등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 최소화</li> <li>▶ 표시 회피를 위한 유형 변경 가능성 차단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li> <li>▶ 소비자 알권리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혼합·특수 유형까지 포함되면서 업계 부담 증가</li> </ul>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 비용 부담 완화</li> <li>▶ 관리·단속 기준 설정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 유형에 대한 GMO 정보 제공이 제한되어 소비자 알권리 측면의 한계</li> <li>▶ 단일·혼합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필요</li> <li>▶ 유형 구분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 부담 증가</li> </ul>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총 6회)  *24년 생산·수입실적 기준 상위업체	(참석자) 간장 제조업체 (일시·장소) `26.1.8 오전, 인스파이어 나인,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표시대상(안) 이견 없음	-	
	(참석자) 당류 제조업체 (일시·장소) `26.1.9 오전, 인스파이어 나인,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표시대상(안) 이견 없음	-	
	(참석자)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수입업체 (일시·장소) `26.1.9 오후, 인스파이어 나인,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표시대상(안) 이견 없음	-	
	(참석자) 식용유지류 제조업체 (일시·장소) `26.1.8 오후, 인스파이어 나인,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대두유, 카놀라유, 옥배유, 면실유, 혼합식용유에 한할 것을 요청	불수용  * (사유) 마가린 쇼트닝 등 식용유지가공품은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이며, 간장 및 당류업계에서 혼합장·기타장류 및 당류가공품을 표시대상으로 수용한 만큼, 제조형태가 유사한 식용유지가공품만을 제외할 경우 당류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참석자) 식용유지류 제조업체 (일시·장소) `26.1.30 오후, 인스파이어 나인,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식용유지류)	대두유, 카놀라유, 옥배유, 면실유에 한할 것을 요청		
	(참석자) 식용유지가공품 제조업체 (일시·장소) `26.2.4 오후, 인스파이어 나인,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식용유지가공품)	대두유, 카놀라유, 옥배유, 면실유에 한할 것을 요청		
소비자·시민단체 (총 3회)	(참석자) 시민단체 (일시·장소) `26.1.15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표시대상(안) 이견 없음		-
	(참석자) 소비자단체 (일시·장소) `26.1.15 오후,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회의실, 대면회의 (논의내용)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참석자) 소비자단체 (일시·장소) `26.1.19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b>(논의내용)</b>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학계·전문가 (총 3회)	<b>(참석자)</b>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 제도 분과 학계 위원 <b>(일시·장소)</b> `26.1.23 오후,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b>(논의내용)</b>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표시대상(안) 이건 없음	-
	<b>(참석자)</b> 식품안전 최고 전문가 자문단 학계 위원 <b>(일시·장소)</b> `26.1.26 오전, 일품진진 수라 광화문점, 대면회의 <b>(논의내용)</b>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b>(참석자)</b>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학계 위원 및 학계 전문가 1인 <b>(일시·장소)</b> `26.1.29 오후, 비즈허브 서울센터, 대면회의 <b>(논의내용)</b> 표시대상(간장[혼합장, 기타장류 포함], 당류, 식용유지류)		

- 「식품위생법」 개정(`25.12.30) 이후, 고시 행정예고 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동 행정예고 내용을 기관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협회, 기관 등에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 수렴 예정
- 현행안을 유지할 경우, GMO를 사용하였음에도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GMO 원료 사용 실태와 표시 제도 운영 목적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표시제도 실효성이 저하됨.
-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6.12.31일부터 표시대상을 확대하도록 입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를 고시로 구체화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거나 입법 취지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규제대안 2와 같이 실질적으로 식용유지류 중 생산량('24년 생산실적보고 기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용유지가공품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표시대상 품목수와 시장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의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 간장 및 당류업계에서 혼합장·기타장류 및 당류가공품을 표시대상으로 수용한 만큼, 제조 형태가 유사한 식용유지가공품만을 제외할 경우 다른 식품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혼합식용유 등)으로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도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식품군'으로 표시 대상을 정하는 '규제대안 1'이 규제의 실효성 등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잔존하지 않더라도 원료 단계에서 GMO를 사용한 일정 식품군(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표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표시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 규제목표

- 최종 제품에는 GMO 성분이 잔존하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 GMO 표시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취지를 구체화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표시대상 식품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이행 기반 마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임.
- GMO 원료 사용 여부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이나, 현행 제도는 최종 제품에 잔존 여부만을 기준으로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원료 단계에서 GMO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본 규제는 GMO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 제공형 규제로서, 사업자의 생산·유통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해당함.
- 또한, 표시대상을 모든 식품으로 일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GMO 원료 사용 가능성이 높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해당하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식약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표시대상을 일부 식품군으로 한정하여 설정하는 점에서 다른 식품에 비하여 규제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본 규제는 GMO 원료를 사용하여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됨
  - 기업의 규모에 따라 표시 여부를 차등화할 경우, 소비자에게 정보의 왜곡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
- 따라서 동일한 표시 기준 적용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 차등화 적용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규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제도 운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새로운 사후 평가관리 체계 도입이 요구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국가별로 자국의 곡물 자급률, 소비자 인식, 농업 구조 등의 여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GMO) 표시제도가 달리 운영되고 있음

- **GMO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 : 미국, 호주**

-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미국, 호주 등)는 대부분 GMO 농산물 수출국임

- **GMO 성분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 : EU, 중국 및 대만**

- ▶ EU의 경우 자국 농산물 생산 비중이 높아 회원국 내로 수입되는 대두, 옥수수 등 GMO 농산물은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함. 따라서, 현재 최종 식품의 GMO 성분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GMO 표시 제품은 없는 실정임
- ▶ 중국, 대만의 경우 최종제품 중 GMO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면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요구

구분	일본	미국	호주	중국	대만	EU
<b>GMO 표시 대상</b>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파파야, 겨자(갓)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파인애플, 호박, 가지, 사탕수수, 연어,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알팔파, 감자, 쌀, 홍화, 바나나, 밀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토마토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대두, 옥수수, 면화, 사탕무, 카놀라
<b>승인 품목</b>	9종 농산물 및 33개 가공식품	14종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11종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5종 농산물, 13개 가공식품 <sup>1)</sup>	5종 농산물, 6개 1차가공품 <sup>2)</sup> , 9개 고차원가공품	5종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b>기준</b>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함량 3순위 이내, 5% 이상인 경우)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남아있는 식품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 (18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식품 (20종)	GMO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b>식용유, 당류 등 GMO표시</b>	표시 제외 (선택적 표시가능)	표시 제외	표시 제외	표시 (식용유만 해당)	표시 (식용유, 간장류, 시럽 등 해당)	표시

<sup>1)</sup> 13개 가공식품(대부분, 대두유, 대두박, 대두단백질, 탈지대두, 옥수수유, 옥수수분, 파쇄옥수수, 옥수수박, 유채씨유, 유채박, 면실유, 면실박)

<sup>2)</sup> 1차가공품(두부, 두유류, 순두부류, 반건조두부, 두부피, 대두단백미트제품) 고차원가공품(대두유, 간장류,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시럽, 면실유, 카놀라유, 사탕무당, 사탕무당밀)

○ 타법사례

(유사입법사례)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1. 커.(개정 당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18-9호, '18.2.23 개정)

-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필요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식용란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사육환경번호, 고유번호 표시하여야 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GMO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 중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한하여 표시 대상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4.5	백만원, 현재가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개정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식품 유형을 확대하여 해당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는 원재료 수급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해당 여부를 구분유통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에 기술적·제도적 어려움은 크지 않음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는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고, 그간 산업계 및 소비자·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오랫동안 제도 도입 및 표시대상 등을 논의해왔으므로, 피규제자는 이미 표시제도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아울러, 표시사항 변경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 일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영업자가 제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본 개정은 기존 운영 중인 표시관리 체계 내에서 표시대상 식품 유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새로운 행정조직이나 인력 증원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존 식품 표시관리 및 점검 체계를 통해 충분히 집행 가능함

##### ○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가능하나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 비용 등은 소폭 증가할 수 있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GMO 표시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25.8.27), 본회의 통과('25.12.2)
-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개최('25.12.19, 제31차)
- 「식품위생법」 개정·공포('25.12.30, 시행 : '26.12.31)
- 이해관계자(산업계, 소비자시민단체) 및 학계·전문가 등 간담회('26.1~2월, 12회)
- GMO 표시대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의결('26.2.11)
- 개정고시(안) 마련 및 처 내 의견조회('26.2.11~2.19)

##### 2. 향후 평가계획

개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자에게 홍보·교육

#####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4. 종합결론

- GMO 표시제도는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의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잔존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가능성이 높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로 인해 동일한 GMO 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잔존하지 않아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GMO 원료 사용 가능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GMO 표시제도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 아울러, 본 개정은 이미 GMO 표시제도의 기본 틀 내에서 표시 대상 식품군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유사제도와 비교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표시 대상 명확화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GMO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 중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한하여 표시 대상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0	0	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본 규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여부에 관한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조·가공 후 GMO가 남지 않는 식품 중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품목에 한해 '표시대상'으로 정하여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소비자는 표시 정보 확대를 통해 제품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는 편익이 기대됨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GMO 성분이 남지 않는 식품 중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한하여 표시 대상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간장 · 당류 · 식용유지류 제조 · 수입업자
활동제목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p>□ 피규제대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에 따라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수는 총 6,034개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류 : 1,689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기준 생산실적이 있는 당류 6,166개 품목 중 같은 해 옥수수 수입량에서 GM 옥수수 비율(27.4%)을 고려하여 산정</li> </ul> </li> <li>- 식용유지류 : 4,345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기준 생산실적이 있는 식용유지류 5,654개 품목 중 들기름, 어유 등 GM 원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하여 산정함</li> </ul> </li> </ul> </li> <li>※ 출처 : `24년 생산실적보고 기준, 통합식품안전정보망</li> <li>※ 한편, 업계 측에 따르면 간장은 대부분 Non-GM 탈지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포장재 교체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li> </ul> <p>□ 규제 비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대상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 비용은 포장재 교체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표시 대응 방식에 따라 간접비용 범위의 변동성이 있음. 현 개정 사항은 GMO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아닌 GMO 표시에 대한 의무 부과이나, 영업자가 GMO 표시를 선택하는지 또는 Non-GM 원료로 전환할지 등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단일 비용 산정이 어려움. 이에 따라 본 규제에 따른 비용은 정량적 산정에 한계가 있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li> <li>○ 표시 기준 준수를 위한 포장재 교체 비용</li> </ul>

- 제품의 포장지는 표시 관련 규정 개정 외에도 자체 디자인 변경, 제품 리뉴얼, 포장재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업체별, 제품별, 포장지 형태, 판매량 등의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포장지 교체 주기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마케팅 등으로 인한 포장지 교체 주기는 통상 약 6개월 정도로 확인되므로 본 개정 사항에 대하여 피규제 대상은 개정안의 시행일, 포장재의 교체주기 조정 등을 통해 직접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식품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분석(식품안전정보원, 2022년)

-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포장재 변경 주기에 본 개정안에 따른 표시 방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에 GMO 원료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의 원료 전환없이 표시 추가만으로 제도 이행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구조적 비용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포장재 폐기 비용**

-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본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규제로 인한 폐기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신제품의 경우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장지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폐기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표시 대응 방식(GMO 표시 또는 Non-GM 원료 사용)의 선택적 구조**

- 현 개정 사항은 GMO 표시에 대한 의무 부과이므로, 업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GMO 표시 또는 Non-GM 원료 사용하여 GMO 표시하지 않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선택’ 구조임. 따라서 일률적인 규제 강제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경영 판단에 따른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임

- 기업이 ‘GMO 표시’ 대신 ‘Non-GM 원료 전환’을 선택할 경우, 원료 수급 단가 상승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는 단순 규제 준수 비용을 넘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비용 성격이 혼재됨. 따라서

	<p>원료 전환 시 초기 비용은 상승하나 전략적 선택 비용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규제 비용으로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p> <p>- 아울러, GMO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상 비의도적 혼입치 관리 의무가 존재하여 구분유통, 시험검사 등 관리 비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는 구조적 관리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p>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소비자)
활동제목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편익항목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식품 선택권 확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확대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재료의 GMO 사용여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자율적·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편익이 있음. 또한 표시 정보의 명확성 제고는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p>